

● 환경부고시제2020-119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호, 2017.3.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

1. 개정 이유

현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호)
- 그 외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개정 내용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한계배출기준(제2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60
황산화물(SO ₂)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0
질소산화물(NO ₂)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 2) 폐기물 소각시설(영 별표 1 제3호의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40

황산화물(SO ₂)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50
질소산화물(NO ₂)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일산화탄소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90

3) 나프타크래킹 가열시설(영 별표 1 제4호의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이 때, 2020.1.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질소산화물(NO ₂)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비고

1.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이 가목 1) 또는 2)에 따라 산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한다)의 2.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라. 방지시설이 설치된 시설로서 가, 나, 다목에 따른 한계배출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사업장 전체 추가오염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설계농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한계배출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 1) 2015년 이후 설치된 배출 또는 방지 시설
- 2) 이법에 따른 허가 후 2년 이내 시설 개선 계획이 있는 해당 배출구 또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 및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적용을 받는 시설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정량한계의 최소값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외의 오염물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호나목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의 100분의 70. 다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I 지역 기준을 따른다.

2) 1) 외의 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나. 규칙 별표 15 제3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가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최대배출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